지평지성 뉴스레터
JIPYONG JISUNG NEWSLETTER
법무법인 지평지성
2012년 12월 제 43호

▌최신 법령▐

[공정거래]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개정

박형삼 변호사 | 이병주 변호사

1.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개정(고시 제2012-호, 2012. 10. 16. 시행)

- 과징금 부과 기준율 상향하고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 합리화

가.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부과 기준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 : 부과기준율을 기존 관련매출액 대비 1% 에서 2%로, 부과 기준금액(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)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

나.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과징금 감경 : 공정위 조사 착수 후 사업자가 해당 거짓·과장 광고를 단순히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자진시정으로 보아 최대 20%까지 과징금을 감경하였으나, 부당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등 실질적 소비자 피해구제의 노력이 있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

다. 조사방해에 따른 과징금 가중 규정 상향조정 및 세분화 : 기존의 경우 조사방해 행위 유형과 무관하게 30%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하였으나, 조사방해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과징금 가중 비율을 차등화하고, 최대 가중 비율도 기존 30%에서 40%로 상향 조정. 예컨대 i) 폭언·폭행,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·지연의 경우 40% 이내, ii) 자료의 은닉·폐기, 접근 거부 또는 위·변조의 경우 30% 이내, iii) 기타 조사방해의 경우 20% 이내에서 가중

2. 다운로드 :

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개정(고시 제2012-62호, 2012. 10. 16. 시행)

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&G 서대문타워 10층 T. 02-6200-1600 F. 02-6200-0800 E. master@jipyong.com
순천 | 부산 | 상해 | 호치민시티 | 하노이 | 프놈펜 | 비엔티안 | 방콕 | 자카르타 | 양곤